

의안번호	2200357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 6. 5.
추계번호	24B0485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천일염 생산단계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3,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억 5,700만원(연평균 1억 3,1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수산물 이력추적관리 (안 제27조제2항)	131	131	131	131	131	657	131

주: 천일염 유통·판매단계의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천일염 생산단계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제2항(수산물 이력추적관리)	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함 1.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(天日)염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7조제2항(수산물 이력추적관리)	○	<천일염 “생산” 단계 이력추적관리> •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		×	<천일염 “유통·판매” 단계 이력추적관리>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천일염의 유통·판매 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경우, 이력제 라벨 추가 제작, 관리 인력 확충 등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-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유통·판매업체 수, 판매 단위 및 수량 등 자료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천일염 이력제 개요

-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·유통·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,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시행중
 -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, 유통, 판매 단계로 나누어 운영중이며, 수산물¹⁾에는 천일염²⁾도 포함

1) 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산물”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법 시행령 제2조(수산물의 범위)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[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(鹽藏)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

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

- (법적 근거)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³⁾
- (현황) 천일염 생산단계 868개소, 유통단계 37개소, 판매단계 1개소에서 이력제에 등록
 - '23년 6월 기준, 전체 염전 허가 건수는 928건으로 '생산단계'의 경우, 93.5%가 이력제에 참여중인 것으로 추정(93.5%=868건/928건)
 - ※ '유통·판매' 단계의 전체 업체 수, 물량 등의 통계는 부재하며 유통·판매 이력제 등록률 추정 곤란
 -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서 염업조합 등에 위탁하여 천일염 이력제 추진·관리 중
 - 천일염 이력추적관리 참여업체는 천일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⁴⁾
- (예산) 최근 3년(2022~2024년)간 천일염산업육성사업 예산

[표 2] 천일염산업육성 사업 예산 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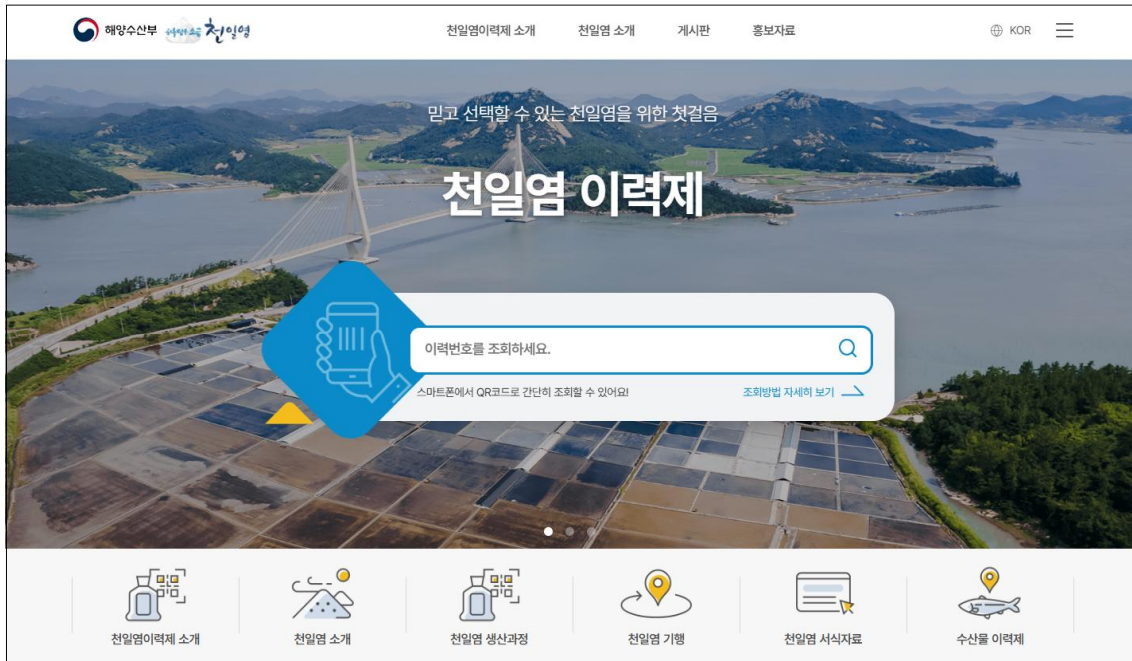
사업명	주요내용	2022	2023	2024
천일염산업육성 (2832-310)		8,370	9,176	7,266
- 천일염이력제관리	천일염 이력제 총괄, 전산시스템 운영, 홍보, 라벨 제작 등	1,900	2,233	1,900
- 천일염품질관리	천일염 관련 계획 수립 등	—	100	—
- 천일염소비촉진홍보	천일염 안전성·우수성 홍보 등	182	298	—
- 천일염품질·위생관리	바닥재, 포장재 지원 등	1,927	1,844	1,844
- 천일염생산·유통시설지원	생산시설자동화 지원 등	2,176	2,058	573
-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치·운영	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운영 등	2,185	1,044	1,050
- 천일염전방사능 검사지원	민간위탁 천일염 방사능 검사 등	—	1,599	1,599
- 전남소금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	소금단지조성 계획 수립 등	—	—	300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가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
- 2) 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4. “천일(天日)염”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, 이를 분쇄·세척·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.
- 3) 법 제27조(수산물 이력추적관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·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·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(이하 “이력추적관리”라 한다)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1.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
 2.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(표시·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·판매자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- 4) <http://www.fishtrace.go.kr/salttrace>

[그림 1] 천일염 이력제 시스템



나. 수산물 이력추적관리: 천일염 이력제 등록 의무화(안 제27조제2항)

□ 개정안에 따라 천일염 이력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, 생산단계 참여업체 수가 소폭 증가하여 관리 및 이력제 라벨 제공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천일염 생산단계의 이력제 참여업체는 868개소로, 전체 생산단계의 약 93.5%가 천일염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
 - 2023년 6월 기준, 염전허가는 928건, 생산단계 참여업체는 868개소

□ 본 추계는 전체 천일염 생산업체가 천일염 이력제에 참여하여 참여율이 현행 93.5%에서 100% 수준으로 상향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 산출

- (현행 참여율) 93.5% → (개정안) 100%
- 추가재정소요 = 개정안에 따른 사업예산 - 현행 사업예산(기준선)
 - = (현행 사업예산 ÷ 93.5%) - 현행 사업예산(기준선)
 - 현행 천일염이력제관리 사업예산: 19억원(2024년 기준)⁵⁾
 - 이때, 현행 사업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5) 천일염 이력제 총괄, 전산시스템 운영, 홍보, 라벨 제작 등

- 추계 결과, 천일염 생산단계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억 5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천일염 생산단계의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천일염 이력제 (생산단계)	현행 사업예산 (A, 기준선)	1,900	1,900	1,900	1,900	1,900	9,500	1,900
	개정안 (B=A/93.5%)	2,031	2,031	2,031	2,031	2,031	10,157	2,031
추가재정소요(C=B-A)		131	131	131	131	131	657	131

주: 1. 본 추계는 천일염 유통·판매단계의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천일염 생산단계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2. 현행 사업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천일염 유통·판매단계의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천일염 생산단계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